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조항을 일치시키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여 청소년육성을 위한 구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를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로 제명변경
- 「청소년기본법」 위임사항 조례 입법개정(안 제1조)
-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정(안 제2조)
-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일부개정(안 제2조)
- 읍·면·동별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임무(안 제10조 ~ 제11조)
-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삭제
-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기능 강화

4. 참고사항

-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2011. 5. 19)으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청소년 지도를 위한 “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와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임무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 부합 되도록 하여 청소년 시책의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종전의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 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읍면동 청소년지도 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을 대표로 구성된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를 운영하고, 간사를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상향조정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을 일치 시켜 구미시 청소년 육성시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나, 읍면동 지도위원회를 폐지하고 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은 소규모 청소년 지도활동의 약화로 읍면동 청소년 지도행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